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3102-01

2020. 5.

#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정책연구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 연구 담당

---

김남훈 | 부연구위원 | 연구 총괄

김태후 | 부연구위원 | 자료 분석, 제2장 및 부록 집필

하인혜 | 연구원 | 자료 분석, 부록 집필

수탁연구보고 C2020-21

###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정책연구

---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0. 5.

발 행 인 | 김홍상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더크리홍보(주)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제 출 문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정책연구(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개편에 대응한 정책연구)」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5월

연구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책임자: 김 남 훈 (부연구위원)

연구 참여자: 김 태 후 (부연구위원)

하 인 혜 (연구원)



우리나라 농촌의 고령화율은 도시보다 높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노후 소득 안전망 확보는 복지 확대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이에 정부는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 연금 가입을 확대하고자 농업인에게 연금보험료를 일부 지원하였다. 그 결과 2019년 말 기준으로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인원은 360,661명,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월 41,518원 수준으로 정책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그동안 시행해온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고소득·고액 재산 농업인에게도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한 사례가 있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연구는 고소득·고액 재산 농업인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드시 지원을 받아야 하는 농업인에게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도록 재산 및 소득 지원 제외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농업 생산 수단인 농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와 형평성도 확보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제외 기준과 지원 대상자 범위에 대한 분석 결과가 향후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개편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0.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농촌의 고령화율은 도시와 비교하여 높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노후 소득 안전망 확보는 복지 확대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이에 정부는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업인의 연금 가입을 확대하고자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제도에서는 재산 관련 제외 기준이 없어 고액 자산가도 지역가입자나 임의 계속가입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농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재산 제외 기준을 신설하고 소득 제외 기준을 재설정하고자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0. 7. 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응하고자 이 연구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제외 기준과 지원 대상 범위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농업인 지원 대상을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으로 제한하는 개선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현재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대상자이며 국민연금공단 제공 자료와 2018년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였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한 자료는 2019년 5월 기준 총 378,858명의 농업인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분석하였다. 농가경제조사는 2018년 농가경제조사 대상자 중 70세 미만 농가 자료를 이용하여 농가의 재산과 소득, 농지 특성, 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농업 생산 기반인 농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농지 수익률을 바탕으로 '재산세 과표기준 12억 원 이상'을 재산 지원 제외 기준으로 제안하였다. 일반 부동산 수익률보다 낮은 농지의 수익률을 고려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실업크레딧 지원 제외 기준인 6억 원에 대응한 12억 원을 적정 제외 기준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소득 기준 변경으로 제외되는 농업인을 최소화하고자 '종합소득 4,119만 원 이상'을 소득 제외 기준으로 제안한다. 이 기준은 소득 기준이 농외소득에서 종합소득으로 바뀌면서 추가로 소득 기준에 포함되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과 과세 농업소득을 고려한 기준이다. 그리고 제외 기준 신설 및 재조정으로 탈락하는 기존 지원 대상자를 고려하여 최소 6개월 정도의 경과 규정이 필요하다.

---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으로 변경할 경우 수혜 농업인 변화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만일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으로 변경하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해야 하는 농업인이나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운 농업인이 지원에서 탈락한다. 따라서 모든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고 4개의 관련 법령을 모두 개정할 때까지 지원 대상 변경을 유예해야 한다.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3

3. 연구 범위 및 내용 ..... 3

4. 연구 방법 ..... 4

**제2장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현황 및 개선 과제**

1. 농업인 국민연금 가입 현황 ..... 5

2.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사업 추진 현황 ..... 7

3. 실태와 개선 과제 ..... 11

**제3장 지원 제외 기준 적정성 분석**

1. 소득 및 재산 지원 제외 기준 ..... 13

2. 지원 제외 기준 변화에 따른 농업인 수혜 범위 변화 분석 ..... 16

3. 재산 제외 기준 적정성 검토 ..... 20

4. 소득 제외 기준 적정성 검토 ..... 28

**제4장 지원 대상 농업인 기준 변경 적정성 분석**

1. 지원 대상 농업인 인정 기준 ..... 31

2. 쟁점 분석 ..... 32

3. 지원 대상 농업인 변경 적정성 검토 ..... 36

**제5장 지원 제외 기준 개선 방안**

1. 적정 재산 및 소득 제외 기준 개선 방안 ..... 39

2. 재산 및 소득 지원 제외 기준 제안 ..... 44

3. 지원 대상 농업인 기준 변경 적정성 .....	46
------------------------------	----

**부록**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	47
국민연금법 시행령 57조, 시행규칙 제36조 .....	5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	54
농지법 제49조 .....	5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56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 .....	57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61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 .....	6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제31조) .....	64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16조) .....	65
농업인 사회보험료 지원 및 노후안정 지원 사업 현황 .....	66

<b>참고문헌</b> .....	<b>71</b>
-------------------	-----------

## 표 차례

## 제2장

〈표 2-1〉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현황 .....	6
〈표 2-2〉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징수율 현황 .....	6
〈표 2-3〉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현황 .....	9
〈표 2-4〉 성·연령별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현황 .....	10

## 제3장

〈표 3-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지원 제외 기준 비교 .....	14
〈표 3-2〉 국민연금공단 제공 자료 기준 농어업인 지원자 중 고소득·고액 재산가 현황 ..	16
〈표 3-3〉 농가경제조사 기준 지원 대상 농어업인 지원자 중 고소득·고액 재산 농가 현황 ·	18
〈표 3-4〉 소득·재산 기준 신설에 따른 농어업 보험료 지원자 및 지원 가능 농가 변화	19
〈표 3-5〉 재산 기준별·경지 규모별 지원 대상 농가 .....	23
〈표 3-6〉 재산 기준별·농가 소득별 지원 제외 농가 .....	23
〈표 3-7〉 재산 기준별·광역지자체별 지원 대상 농가 .....	24
〈표 3-8〉 2019년도 10a당 논벼 수익성 .....	25
〈표 3-9〉 2018년도 쌀 평균 생산량(쌀 변동 직불금 기준)과 소득 .....	26
〈표 3-10〉 논벼 농지의 소득률 추정 결과 .....	26
〈표 3-11〉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 추정 .....	27
〈표 3-12〉 일반 부동산 6억 원에 대한 농지의 재산 제외 기준 비교 .....	28
〈표 3-13〉 농외소득별 농가소득 현황 .....	29

## 제4장

〈표 4-1〉 신청 방법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건수 .....	32
〈표 4-2〉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	34
〈표 4-3〉 「농업인 확인 발급규정」 관련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 여부 .....	35

## 제5장

〈표 5-1〉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재산 제외 기준 개선안 요약 .....	39
〈표 5-2〉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를 이용한 재산 제외 기준 .....	41
〈표 5-3〉 종합부동산세 산정 방법 .....	42
〈표 5-4〉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별 지원대상 금액 및 지원 보험료 수준 비교 .....	45

## 부록

〈부표 1〉 농업인 지원 사업 요약 .....	66
〈부표 2〉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내용 .....	67
〈부표 3〉 2018년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현황 .....	67
〈부표 4〉 농어촌 지역 보험료 경감사업 지역 및 대상자 자격 .....	68
〈부표 5〉 농지연금 연도별 가입 통계 .....	69
〈부표 6〉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	70

**제1장**

〈그림 1-1〉 연도별 농업인 고령화 추세 ..... 2  
〈그림 1-2〉 도시·농촌 고령화율 비교 ..... 2

**제2장**

〈그림 2-1〉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정부-농업인 부담 구조 ..... 8

**제4장**

〈그림 4-1〉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처리 과정 .....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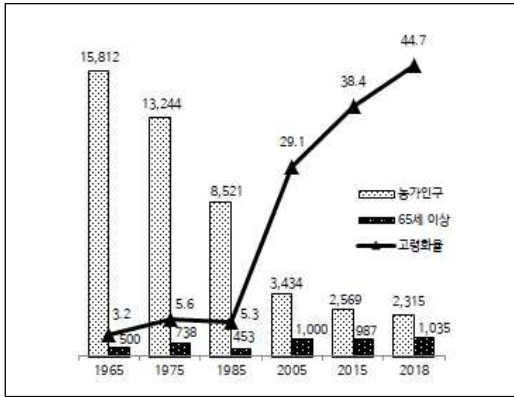
# 1

## 서론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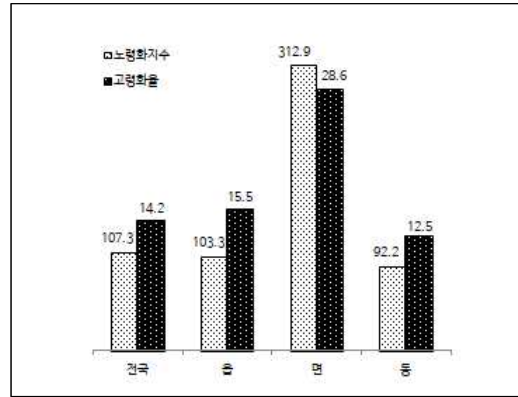
- 농촌의 고령화율은 도시와 비교하여 높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노후 소득 안정망 확보는 복지 확대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임.
  -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후 18년 만인 20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함<그림 1-1>.
  - 면 지역의 고령화율은 28.6%로 동 지역의 12.5%와 같은 농촌인 읍 지역의 15.5%보다 높음<그림 1-2>.
  
- 이에 정부는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업인의 연금 가입을 확대하고자 「국민연금법」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이 제도는 1995년 도입 당시 2004년까지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최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그림 1-1 연도별 농업인 고령화 추세



자료: 통계청(2019a). 통계로본 쌀 산업구조 변화.

그림 1-2 도시·농촌 고령화율 비교



자료: 통계청(2018a). 2017 인구주택총조사.

○ 현 제도에는 재산 관련 제외 기준이 없어 고액 자산가도 지역가입자나 임의 계속가입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함.

- 재산 요건 부재는 다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와 비교할 때 복지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와 실업크레딧은 재산 6억 원 미만이라는 재산 요건을 갖추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외 기준에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적용하고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를 개정하고 2020. 7. 1부터 시행할 예정임.

-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득과 재산 지원 제외 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농업인 범위와 관련하여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으로 제한할 필요성을 제기함.

- 농업 관련된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나,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대상에는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농업인도 포함함.
- 2019년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자 중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은 18,375건으로 전체의 5.3% 수준임.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으로 제한할 경우 농업인의 수혜 범위 변화에 따른 쟁점, 법률 문제, 제한으로 생기는 장단점 등을 파악하여 농업인 범위 제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sup>1)</sup>

## 2. 연구 목적

-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제외 기준과 지원 대상 범위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함.
  - 농업인 소득과 재산의 특성을 반영하고, 다른 국민연금 지원제도와와의 형평성 등을 비교 분석한 후 적정기준 및 근거를 제시함.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으로 제한하는 방안의 적정성 여부와 근거를 제시함.
  - 지원 대상을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으로 제한할 경우 혜택에서 제외되는 농업인의 특성을 분석함.

## 3. 연구 범위 및 내용

-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고 지원 제외 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함.
  - 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와 현황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자 현황과 제외 기준, 지원 법률 등을 분석함.

---

1) 2019년 쌀직불금 지급 대상자도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및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임.

- 다른 복지제도와와의 형평성을 분석하고 타 농업인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와 노후생활 보장 지원 제도를 검토함.
  - 지원 제외 기준 변화에 따른 농업인의 수혜 범위 변화를 분석하고 다른 국민연금 지원 제도와 형평성 등을 비교 분석함.
- 농업인 지원 대상을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으로 제한하는 개선안에 대한 적정성을 분석함.
- 지원 대상 변환에 따른 농업인 수혜 범위 변화와 법률을 검토하고 논리적 근거를 제시함.

## 4. 연구 방법

- 연구 대상은 현재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대상자이며 국민연금공단 제공 자료와 2018년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함.
-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월 기준으로 총 378,858명에게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
  -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종합소득 금액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분석함.
  - 이와 함께 농업인 전체의 재산과 소득, 농지 특성, 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2018년 농가경제조사 대상자 중 70세 미만 농가 자료를 이용함.
- 국민연금공단 제공 자료는 전체 농업인이 아닌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이므로 전체 농업인의 특성과 재산 및 소득 현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 전체 농업인의 재산 및 소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8년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나 농업인이 아닌 농가 단위임.
  - 농가경제조사는 연령 구분이 10세 단위이므로 70세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실제 정책 대상은 65세 미만 농가로서 분석에 한계가 있음.

# 2

##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현황 및 개선 과제

### 1. 농업인 국민연금 가입 현황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수에서 농어업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1월 말 기준으로 약 3.8%이며 임의계속가입자수는 동기간 17.9%임.

- 인원수로는 농어업인 약 36만 명이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음<표 2-1>.
- 지역가입자는 2016년 810만 명에서 2019년 710만 명으로 약 100만 명 감소하였으며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역시 동기간 33만 명에서 27만 명으로 약 6만 명 감소함.
- 지역가입자 중 농어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4.1%에서 2019년 3.8%까지 소폭 하락함.
- 임의계속가입자수는 2016년 28만 명에서 2019년 50만 명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농어업인 임의계속가입자는 동기간 5.5만 명에서 9만 명으로 증가함.
- 전체 임의계속가입자 중에서 농어업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19.5%에서 2019년 17.9%로 감소함.

**표 2-1**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현황

단위: 명,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역가입자 수(A)	8,060,199	7,691,917	7,694,885	7,078,090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수(B)	330,756	314,841	294,304	270,823
비율(B/A)	4.1	4.1	3.8	3.8
임의계속가입자 수(C)	283,132	345,292	470,599	500,815
농어업인 임의계속 가입자 수(D)	55,337	67,467	85,258	89,838
비율(D/C)	19.5	19.5	18.1	17.9
농어업인 가입자수(B+D)	386,093	382,308	379,562	360,661

주: 각 연도 말 기준이나 2019년은 11월 말 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및 월별 통계자료.

○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징수율은 높음<표 2-2>.

- 월수 기준으로 2016~2018년 3년간 징수율은 93% 이상이며 금액으로도 94% 이상임.
- 농어업인 징수율은 비농업인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인데 정부 지원이 미납률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임2).

**표 2-2**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징수율 현황

단위: 개월, 백만 원, %

구분	고지		징수		징수율		미납	
	월수	금액	월수	금액	월수	금액	월수	금액
2016	3,997,930	226,627	3,726,400	213,084	93.21	94.02	271,530	13,543
2017	3,995,859	232,845	3,694,206	219,757	93.39	94.38	261,653	13,088
2018	3,739,964	226,523	3,498,738	213,991	93.55	94.47	241,226	12,532

자료: 국민연금공단(2019). 2018년 국민연금통계연보 제 31호.

2) 비농업인 지역가입자 2018년도 징수율은 월수 기준 67.1%, 금액기준 68.23%임.

## 2.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사업 추진 현황

### 2.1 지원 사업 개요

- 농어업인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업인의 연금 가입을 확대하고자 「국민연금법」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
  - 1995년 제도 도입 당시 2004년까지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기간이 계속 연장되어 최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음.
  
-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요건 및 ‘농어업소득 및 농어업의 소득’ 요건을 충족한 농어업인임.
  - 농어업인 요건을 확인하려면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농지원부,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sup>3)</sup>(지자체장 확인)를 제출해야 함.
  - 소득 요건은 농어업의 소득이 농어업소득을 초과하거나 농어업의 소득이 전년도 평균소득월액(2019년 기준 2,530,634원)의 12배를 초과할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함.<sup>4)</sup>

#### 글상자 1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사업목적: 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 도모
- 지원대상: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근거법령: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7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지원내용: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일부 지원
  - 기준소득금액(97만 원) 이하: 본인 보험료의 1/2 지원
  - 기준소득금액 초과: 43,650원/월 정액 지원
- \* 기준소득금액: ('06) 480천 원 → ('08) 620 → ('09) 730 → ('10) 790 → ('14) 850 → ('15) 910 → ('19) 970

- 3)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과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의 농업인 확인서 발급과는 별개임.
- 4) 2020.6.30.까지 적용하는 규정이며 이후에는 종합소득금액 및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인 자로 적용 예정임.

- 지원 방식: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하고 농어업인은 부과된 고지서의 금액 확인 후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함.

- 지원절차: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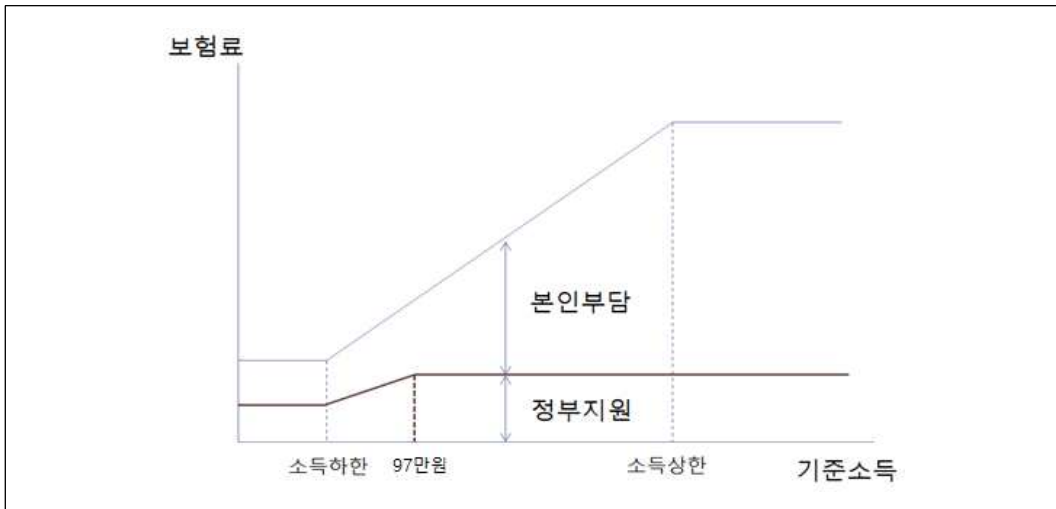


자료: <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php>.

○ 지원 방식은 본인이 부담할 월 연금보험료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43,650원을 지원함<그림 2-1>.

- 기준소득월액이 기준소득금액 이하면 본인 보험료의 1/2 수준을 정률로 지원하고, 초과자는 기준소득금액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액으로 지원함.

**그림 2-1**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정부-농업인 부담 구조



자료: 임소영·최예준 2015:10.

## 2.2 지원 현황

- 2019년 말 기준으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인원은 360,661명이며,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월 41,518원 수준임.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은 2016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농어업인 지역가입자가 감소함.
  - 연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금액은 2015년 이후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1,812억 원임.
- <표 2-3>에 따르면 고령화로 지원자 중 지역가입자는 감소 추세지만 임의계속가입자는 증가함.
  - 지역가입자인 60세 미만 농어가 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임의계속가입자인 60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는 증가했기 때문임.
  - 60세 미만 농어가 인구대비 지역가입자 수는 2018년 35.0%, 60세 이상 65세 미만 임의계속가입자 수는 25.6%까지 상승함.

**표 2-3**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현황

단위: 명, (%), 억 원,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보험료 지원 인원		373,228	386,093	382,308	379,562	360,661
지역가입자	인원	330,997	330,756	314,841	294,304	270,823
	비율	(30.2)	(32.7)	(33.6)	(35.0)	(32.2)
임의계속가입자	인원	42,231	55,337	67,467	85,258	89,838
	비율	(13.1)	(16.5)	(20.6)	(25.6)	(26.9)
연간 지원금액		1,610	1,700	1,768	1,769	1,812
1인당 평균 지원월액		38,305	38,816	39,183	39,454	41,518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 <표 2-4>에 따르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자는 2016년까지 남성의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 여성 농어업인 수가 늘어나면서 2016년에 비율이 역전되었음.

- 2013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부부가 본인 소득을 각각 신고한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음.
- 2019년 남성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자는 163,942명(45.5%)이고 여성 지원자는 196,719명(54.5%)임.

**표 2-4** 성·연령별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현황

단위: 명,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191,783 (49.7)	194,310 (50.3)	180,709 (47.3)	201,599 (52.7)	176,849 (46.6)	202,713 (53.4)	163,942 (45.5)	196,719 (54.5)
20대 이하	870 (0.2)	305 (0.1)	964 (0.3)	310 (0.1)	1,010 (0.3)	348 (0.1)	1,030 (0.3)	353 (0.1)
30대	6,776 (1.8)	3,697 (1.0)	6,962 (1.8)	3,854 (1.0)	6,988 (1.8)	3,942 (1.0)	6,880 (1.9)	3,834 (1.1)
40대	33,587 (8.7)	25,730 (6.7)	30,910 (8.1)	25,254 (6.6)	27,894 (7.3)	23,061 (6.1)	25,664 (7.1)	20,937 (5.8)
50대	135,991 (35.2)	123,800 (32.1)	124,321 (32.5)	122,266 (32.0)	113,613 (29.9)	117,448 (30.9)	103,174 (28.6)	108,951 (30.2)
60세 이상	14,559 (3.8)	40,778 (10.6)	17,552 (4.6)	49,915 (13.1)	27,344 (7.2)	57,914 (15.3)	27,194 (7.5)	62,644 (17.4)

주: 각 년도 말일 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김현수·류재린(2019) 일부 수정.

## 2.3 소득 및 재산 지원 제외 기준

○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지원 제외 기준은 2020. 6. 30.까지 농업 소득과 농외소득과의 관계를 반영한 소득 기준을 적용하며 직접적 소득 제외 기준이나 재산 제외 기준은 없음.

- 농업소득은 파악이 어려워 농업소득을 직접 소득 제외 기준으로 활용하지 않고 농외소득이 농업소득을 초과하거나 농외소득이 표준소득월액의 12배를 초과하면 지원을 제외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함.



- 2020. 7. 1.부터 시행하는 지원 제외 기준은 종합소득금액 및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인 자로 한정하여 농업 현실과 맞는 소득과 재산 제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과 같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실업크레딧이 있으며 사업 간 지원 제외 기준은 <표 3-1>과 같음.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 소득, 재산 제외 기준이 있으며 실업크레딧은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 소득과 재산 제외 기준을 설정함.

### 3. 실태와 개선 과제

- 농업인의 가입률이 비농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가입률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8%와 17.9%로 2016년 4.1%, 19.5%와 비교하여 지속해서 낮아짐.
  -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sup>5)</sup>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018년 기준 35.6%로 전체 가입률 7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농업인의 평균 국민연금 수급 금액도 전체 국민과 비교하여 낮아 향후 노후 소득 안정성 측면에서 대책이 필요함.
  - 기준소득 금액이 2020년 현재 97만 원이며 지원하는 보험료가 최대 43,650원 수준에 불과하여 향후 농업인이 받는 수급 금액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sup>5)</sup>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392>.

-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실제 농업인 평균 국민연금 수급 금액은 월 261,000원으로 전체 국민의 1인당 수급 금액인 월 509,000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함.

○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재산 기준이 없어 농업인 중 고액 재산가가 포함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많은 재산을 소유한 농업인이나 소득이 높은 농업인에게도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들을 제외하는 방안이 필요함.

- 지원 제외 기준 설정은 가입률이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 가입률 하락을 가속화 하므로 농업인의 노후 생활 보장이라는 원래 취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고액 자산가 제외와 가입률 하락 방지를 고려한 적정한 소득·재산 기준의 설정이 필요함.

○ 농업 관련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하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농업인도 가능함.

-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대상자의 범위가 서로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농업인 자격을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로 한정할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어려운 농업인이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3

## 지원 제외 기준 적정성 분석

### 1. 소득 및 재산 지원 제외 기준

-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지원 제외 기준은 2020. 6. 30.까지 농업 소득과 농외소득과의 관계를 반영한 소득 기준을 적용하며 직접 소득 제외 기준이나 재산 제외 기준은 없음.
  - 농업소득은 파악이 어려워 직접 소득 제외 기준으로 활용하지 않고 농외소득이 농업 소득을 초과하거나 농외소득이 표준소득월액의 12배를 초과하면 지원을 제외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적용함.
  - 2020. 7. 1.부터 시행하는 지원 제외 기준에서는 종합소득금액 및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인 자로 한정하여 농업 현실과 맞는 소득과 재산 제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과 같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실업크레딧이 있으며 사업 간 지원 제외 기준은 <표 3-1>과 같음.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 소득, 재산 제외 기준이 있으며 실업크레딧은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 소득과 재산 제외 기준을 설정함.

**표 3-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지원 제외 기준 비교

사업명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비고
농업인 지원	-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037만 원 초과 - 농업 외 소득이 농업 소득 초과	-	2020.06.30까지
	- 종합소득금액 및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인 자	-	2020.07.01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근로소득 2,838만 원 이상 - 근로소득 제외 종합소득 2,100만 원 이상	6억 원 이상	- 2019.12.31. 이전부터 지원받은 근로자는 근로소득 제외 종합소득 2,520만 원 이상임.
실업크레딧	- 근로·사업소득 제외 1,680만 원 초과	6억 원 초과	-

주: 2020년 적용 평균소득월액 연 환산액 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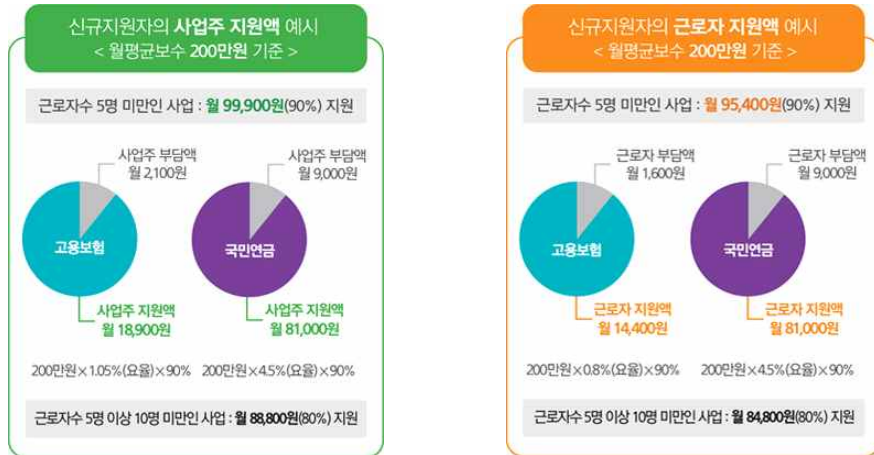
○ <표 3-1>에 따르면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지원 대상 제외 기준에는 다른 국민연금 지원 제도와 달리 재산 기준이 없어 농업인 중 고액 재산가가 포함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재산 제외 기준은 농업소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간접적으로 지원 제외 농업소득을 설정하는 효과도 있으나 농업생산 기반 재산인 농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 제외 기준을 설정하면 지원 당위성이 있는 농업인을 제외할 가능성이 있어 재산 지원 제외 기준 적정성 분석이 필요함.

**글상자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목적: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함.
-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
- 지원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함.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 원 이상인 자 (‘19.12.31. 이전부터 지원받은 근로자는 연 2,520만 원 이상)
- 지원기준
  - 신규지원자 : 5명 미만 사업 90% 지원 /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 지원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지원)
  - \* 2018.1.1.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 자
  - 기지원자: 10명 미만 사업 30% 지원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지원)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함.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금액 예시



자료: <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php>.

### 글상자 3 실업크레딧

- 사업목적: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산입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함.
-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지원제외대상: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 보험료 지원방법: 인정소득은 실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자료: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201500004>.

## 2. 지원 제외 기준 변화에 따른 농업인 수혜 범위 변화 분석

- 지원 제외 기준 개정에 따라 기존 지원자 중 지원에서 제외되는 인원수를 파악하고자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2종류의 자료(A, B)와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 국민연금공단 자료 A는 2019년 5월 말 기준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전체의 구간별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 금액을 포함함.
  - 국민연금공단 자료 B는 2020년 3월 말 기준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농업인 지역가입자 255,098명의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과 성별, 연령, 거주 지역 정보임.
  - 국민연금공단 자료 A의 전체 지원 대상 농업인은 378,858명이며 이 중에서 종합소득 금액과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가 있는 농업인 305,45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국민연금공단 자료 A를 분석한 결과, 기준 조정에 따른 기존 지원자 중 탈락하는 인원수는 <표 3-2>와 같음.
  - 2019년 지원자 중 재산 제외 기준과 소득 제외 기준을 설정하고 각 제외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수혜 및 제외 대상자가 얼마나 변하는지 파악하고자 함.

**표 3-2** 국민연금공단 제공 자료 기준 농어업인 지원자 중 고소득·고액 재산가 현황

단위: 원, 명

구분		종합소득금액				
		3,000 미만	3,000 이상 ~4,000 미만	4,000 이상 ~5,000 미만	5,000 이상	합계
재산세 과세표준	6억 미만	292,363	333	185	383	293,264
	6억 이상~9억 미만	7,473	20	12	43	7,548
	9억 이상~11억 미만	1,856	6	5	21	1,888
	11억 이상~15억 미만	1,631	9	6	18	1,664
	15억 이상	1,049	5	7	26	1,087
	합계	304,372	373	215	491	305,451

주: 2019.5 기준임. 분석 대상 농업인은 전체 지원 대상 농업인 378,858명 중 종합소득 금액 및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있는 305,451명임.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한 자료와 함께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이용함.

- 농가경제조사는 작물재배현황, 수입·지출, 농업노동 투입내역, 농가자산 및 부채 등을 조사하여 농가경제의 동향과 농업경영실태를 파악하고 농업정책 수립과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농가경제조사는 2015년 농업총조사에서 파악된 농가 중 3,000개 농가가 대상이며 이 연구에서는 전체 농업인을 추정하고자 전국 승수와 단독 가구 가중치를 이용하여 모집단 빈도를 추정함.<sup>6)</sup>
- 표본 수는 3,000개 농가(모표본 1,020,838개)이나 경영주가 70세 이상인 농가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70세 미만 1,778개(모표본 약 521,749개) 농가만 분석에 활용함.<sup>7)</sup>

○ 농가경제조사의 재산 기준은 「지방세법」 4조의 규정에 따라 표본 농업인이 보유한 토지와 건물, 구축물 등을 공정시장가액비율인 70%를 곱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이용하였고 소득 기준은 농외소득으로 하였음.

-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과 구축물은 시장 가액으로 계산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농가경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토지와 건물, 구축물 평가액을 준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 농가경제조사의 농외소득은 종합소득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나 농외소득이 농업 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이자나 배당소득 등을 포함하고 있어 종합소득금액 근사치로 이용함.

○ 상기 기준에 따라 농가경제조사 자료의 재산세 과세표준과 농외소득을 이용하여 지원 대상자 수 변화 추정 결과는 <표 3-3>과 같음.

- 농외소득 3,000만 원 미만 농가 중에서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으로 15억 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70세 미만 농가는 5,017명으로 농외소득 3,000만 원 미만 농가 중 약

6) 농가경제조사는 조사 대상이 농업인이 아닌 농가로 실제 농업인 수를 추정할 수 없음.

7)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지역가입자 농업인과 60세 이상 65세 미만 임의계속가입자 농업인이 대상인데 농가경제조사는 10세 단위로 연령 정보를 제공하므로 65세를 기준으로 연령을 분리할 수 없음.

1.3%, 11억 원 이상은 10,643명, 2.8%, 9억 원 이상은 15,390명, 4.0%임.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나 실업크레딧의 재산 제외 기준인 6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농외소득 3,000만 원 미만 농가 중 약 8.3%가 탈락함.

**표 3-3** 농가경제조사 기준 지원 대상 농어업인 지원자 중 고소득·고액 재산 농가 현황

단위: 호

구분		농외소득				합계
		3,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4,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이상	
재산세 과표	3억 원 미만	275,311	27,112	15,300	44,304	362,027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76,716	6,487	4,950	15,081	103,234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16,383	2,353	2,282	9,066	30,084
	9억 원 이상~11억 원 미만	4,747	1,342	525	2,750	9,364
	11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5,626	732	1,053	3,191	10,602
	15억 원 이상	5,017	152	-	1,269	6,438
	합계	383,800	38,178	24,110	75,661	521,749

자료: 통계청(2018b).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국민연금공단 자료 A와 농가경제조사 자료로 추정한 재산 및 소득 제외 기준 설정에 따른 지원자 변화는 <표 3-4>와 같음.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실업크레딧 재산 제외 기준인 6억 원과 종합부동산세 기준인 9억 원,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자료 A에서 설정한 재산세 과표 구간에 따라, 재산 지원 제외 기준을 11억 원과 15억 원으로 설정함.
- 소득 제외 기준은 표준소득금액의 연 환산소득과 유사한 3,000만 원과 1,000만 원씩 증가한 금액인 4,000만 원과 5,000만 원으로 설정함.



**표 3-4** 소득·재산 기준 신설에 따른 농어업 보험료 지원자 및 지원 가능 농가 변화

단위: 명, 호, %

재산 요건	지표	종합 소득(국민연금공단 제공 자료 A)				농외소득 (농가경제조사)
		3,000만 원 미만	4,000만 원 미만	5,000만 원 미만	없음	
6억 원 미만	대상자	292,363	292,696	292,881	293,264	352,027
	감소인원	13,088	12,755	12,570	12,187	31,773
	감소율	4.3	4.2	4.1	4.0	8.3
9억 원 미만	대상자	299,836	300,189	300,386	300,812	368,410
	감소인원	5,615	5,262	5,065	4,639	15,390
	감소율	1.8	1.7	1.7	1.5	4.0
11억 원 미만	대상자	301,692	302,051	302,253	302,700	373,157
	감소인원	3,759	3,400	3,198	2,751	10,643
	감소율	1.2	1.1	1.0	0.9	2.8
15억 원 미만	대상자	303,323	303,691	303,899	304,364	378,783
	감소인원	2,128	1,760	1,552	1,087	5,017
	감소율	0.7	0.6	0.5	0.4	1.3

주: 국민연금공단 제공 자료 A는 2019.5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상자 305,451명을 대상으로 함. 농가경제조사 자료는 농외소득 3,000만 원 이하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한 70세 미만 농가 383,800개를 대상으로 함. 감소인원과 감소율은 전체 대상자 305,451명과 383,800개 농가를 기준으로 함.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통계청 2018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표 3-4>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자료 A를 이용하면 종합소득 3,000만 원 이하 농업인 중에서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으로 15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농업인은 상위 0.3%, 11억 원은 0.9%, 9억 원은 약 상위 1.5%에 해당함.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나 실업크레딧 지원 제도의 재산 제외 기준인 6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농업인은 상위 3.9%에 해당함.

○ <표 3-4>에 따르면 농가 경제 조사 자료를 이용하면 농외소득 3,000만 원 이하 농업인 중에서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으로 15억 원 초과 재산을 보유한 농업인은 상위 1.3%, 11억 원 초과는 상위 2.8%, 9억 원 초과는 상위 4.2%임.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나 실업크레딧 지원 제도의 재산 제외 기준인 6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농업인은 상위 8.6%에 해당함.

- <표 3-4>는 단순히 지원 제외 기준에 따른 대상자 수의 변화를 나타내며, 이를 기반으로 농지가 농업 생산 수단이라는 특수성 고려하여 농업인이 보유한 재산을 이용한 지원 제외 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하려면 다음과 같은 쟁점 사항을 검토해야 함.
  - 재산 제외 기준 변경으로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농업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여 지원 당위성이 있는 대상자를 제외했는지 여부
  - 농지를 재산의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 포함할 경우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지 못하는 다른 일반 재산과 동일한 제외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지 여부

### 3. 재산 제외 기준 적정성 검토

#### 3.1. 농업생산 수단인 농지의 특수성

- 재산은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수단으로 이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재산과 재산을 보유함으로 자본 소득을 창출하는 재산 및 기타로 구분할 수 있음.
  - 재산을 생산 수단으로 이용하여 지속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므로 처분을 가정한 재산의 시장 평가는 중요하지 않으며 재산 평가액과 생산물이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음.
  - 자본 소득을 창출하는 재산은 재산의 시장 가치를 근거로 이자나 배당 소득을 창출하고 처분을 전제로 자본 이득을 얻으므로 재산의 시장 평가액이 중요하며 재산 평가액과 자본 소득이 대체로 비례하여 증가함.
- 농업생산 기반인 농지는 농업 생산물을 생산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재산이므로 재산 처분을 가정한 시장 평가액과 농업생산이 비례하지 않아 재산 제외 기준을 이용하는 것은 농지의 특성과 맞지 않음.
  - 필수 재산인 농지는 법적·제도적으로 농업 외 용도로 전환이 어렵고 농업인이 농지를 매도하려는 경향보다 보유하려는 의사가 더 강하며, 특히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

원 대상자인 60세(임의 계속 가입자를 포함하면 65세) 미만 농업인이 재산을 처분한다고 가정한 재산 평가는 적절하지 않음.

- 농업 생산물은 농지의 평가액보다 농지의 면적, 농지의 비옥도, 투입 노동력, 날씨, 기후, 농산물 가격과 수요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농지 평가액으로 지원 제외 기준을 설정하면 지원 당위성이 있는 농업인을 제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농업 생산물과 이를 평가한 생산액 또는 농업 소득을 기준으로 제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특정 농업인을 제외한 대다수 농업인의 농업소득이 비과세 소득이므로 비과세 소득으로 농업생산을 파악하여 소득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다른 지원 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 농지 평가액을 기준으로 적정 제외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면 농지의 소득률과 일반 부동산 수익률을 비교함으로써 제외 기준을 산정할 수 있음.

- 농업생산 수단인 농지의 소득률을 기회비용 개념을 적용한 시중 이자율이나 기대 여명을 적용한 연금화 수익률로 대체할 수 없어 농지를 매개로 창출한 농업 생산물을 평가하여 추정해야 함.
- 등가 환산 방식<sup>8)</sup>을 이용하여 농지평가액을 재산출할 수 있는데 만약 농지수익률이 일반 부동산 수익률보다 낮으면 일반 부동산보다 높은 가액을 제외 기준으로 설정, 반대이면 낮은 가액을 재산 기준으로 설정해야 함.

○ 농업생산 수단인 농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산 제외 기준 적용 시 대상자 특성에 따라 지원 당위성이 있는 농업인의 지원 제외 여부를 확인하고 농지와 일반 부동산의 수익률을 비교하여 적절한 제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sup>8)</sup> 등가 환산 방식을 이용하여 같은 수익 금액을 가정하면 농지 가액은 '일반 부동산 평가액 × 부동산 수익률 = 농지 평가액 × 농지 수익률'로부터 '농지 평가액 = 일반 부동산 평가액 × (부동산 수익률 / 농지 수익률)'로 산정할 수 있음.

### 3.2. 지원 제외 대상자 특성에 따른 재산 제외 기준 분석

- 농업생산 수단인 농지는 농업 생산물을 생산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재산이므로 시장 평가액과 농업생산이 비례하지 않아 재산 가액을 제외 기준으로 이용하기 어려움.
- 재산 평가액으로 설정한 재산 제외 기준의 적정성을 파악하고자 제외 기준을 설정하거나 제외 기준이 변화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
  - 농외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인 농가를 대상으로 재산 기준을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9억 원, 11억 원, 15억 원 초과로 설정하고 제외 기준별로 경지 규모와 농업 및 농가소득, 농가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영농 형태에 따른 대상자 수와 비율의 변화를 조사하고 제외되는 농가의 특성을 분석함.
- <표 3-5>에 따르면 재산 제외 기준을 신설하면 농지 면적 기준으로는 대농이 아님에도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있음.
  - 제외 기준이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을 재산 제외 기준으로 설정하면 대농가가 아닌 3ha 미만 농지를 소유한 농가 중 6.8%<sup>9)</sup>가 제외되며 9억 원이면 3.5%, 12억 원이면 1.6%가 농가에서 탈락함.
  - 제외 기준이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이면 보유 농지가 0.5ha 미만인 소농가 중 5.8%가, 9억 원이어도 2.9%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함.

---

<sup>9)</sup> 6.8% = (6,571 + 15,127) / (113,257 + 206,593).

**표 3-5** 재산 기준별·경지 규모별 지원 대상 농가

단위: 호, (%)

농지 규모	재산 제외 기준(재산세 과표)					
	전체	6억 원	9억 원	11억 원	12억 원	15억 원
0.5ha미만	113,257	6,571 (5.8)	3,324 (2.9)	2,986 (2.6)	2,986 (2.6)	2,624 (2.3)
0.5~3.0ha	206,593	15,127 (7.3)	7,789 (3.8)	4,029 (2.0)	2,019 (1.0)	1,163 (0.6)
3.0~10.0ha	57,059	8,563 (15.0)	3,933 (6.9)	3,482 (6.1)	1,892 (3.3)	1,179 (2.1)
10.0ha이상	6,891	1,510 (21.9)	343 (5.0)	145 (2.1)	145 (2.1)	51 (0.7)
합계	383,799	31,771	15,389	10,642	7,043	5,017

자료: 통계청(2018b)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표 3-6>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을 제외 기준으로 설정하면 농가소득이 적은 현저히 적은 농가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함.

- 재산 제외 기준이 과세표준 6억 원이면 농가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빈곤 농가 중 11.6%의 농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9억 원이면 7.1%의 농가가, 12억 원이어도 2.9%의 농가가 탈락함.

**표 3-6** 재산 기준별·농가 소득별 지원 제외 농가

단위: 호, (%)

농가소득	재산 제외 기준(재산세 과표)					
	전체	6억 원 초과	9억 원 초과	11억 원 초과	12억 원 초과	15억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50,880	5,883 (11.6)	3,638 (7.2)	2,974 (5.8)	1,459 (2.9)	1,097 (2.2)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76,629	6,123 (8.0)	3,973 (5.2)	1,042 (1.4)	1,042 (1.4)	1,042 (1.4)
2,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83,963	3,380 (4.0)	2,144 (2.6)	1,806 (2.2)	1,451 (1.7)	852 (1.0)
3,000만 원 초과	172,327	16,387 (9.5)	5,634 (3.3)	4,819 (2.8)	3,090 (1.8)	2,025 (1.2)
합계	383,799	31,773	15,389	10,641	7,042	5,016

자료: 통계청(2018b)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표 3-7>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높은 경기도와 제주도 지역 농가가 다른 지자체 농가보다 재산 제외 기준을 신설할 때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비율이 높음.

- 재산 제외 기준이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농가의 25.9%의 농가가 지원에서 제외되며 9억 원이면 17.2%, 12억 원이면 8.1%인 농가가 지원에서 탈락함.
- 제주도에서도 재산 제외 기준이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이면 농가 중 27.6%가, 9억 원이면 18.5%, 12억 원이면 9.6%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함.

**표 3-7** 재산 기준별·광역지자체별 지원 대상 농가

단위: 호, (%)

지역	18세~59세 지원 대상자 <sup>1</sup> (국민연금공단 자료 B)					70세 미만 농가 <sup>2</sup> (농가경제조사)				
	전체 대상자	제외 대상자				전체 대상자	제외 대상자			
		9억 원	11억 원	12억 원	15억 원		9억 원	11억 원	12억 원	15억 원
경기도	26,272	1,449 (5.5)	919 (3.5)	735 (2.8)	423 (1.6)	64,002	11,212 (17.5)	7,757 (12.1)	5,730 (9.0)	3,608 (5.6)
제주도	11,490	405 (3.5)	231 (2.0)	176 (1.5)	79 (0.7)	18,672	2,479 (13.3)	2,127 (11.4)	1,175 (6.3)	276 (1.5)
강원도	16,490	189 (1.1)	92 (0.6)	62 (0.4)	29 (0.2)	41,255	422 (1.0)	375 (0.9)	174 (0.4)	0 (0.0)
경상남도	32,999	338 (1.0)	185 (0.6)	143 (0.4)	63 (0.2)	65,605	1,634 (2.5)	281 (0.4)	174 (0.3)	105 (0.2)
경상북도	43,220	232 (0.5)	129 (0.3)	94 (0.2)	37 (0.1)	85,269	807 (0.9)	807 (0.9)	265 (0.3)	0 (0.0)
전라남도	34,089	102 (0.3)	48 (0.1)	34 (0.1)	18 (0.1)	54,707	452 (0.8)	309 (0.6)	309 (0.6)	0 (0.0)
전라북도	25,556	130 (0.5)	67 (0.3)	46 (0.2)	24 (0.1)	48,640	198 (0.4)	0 (0.0)	0 (0.0)	0 (0.0)
충청남도	26,936	346 (1.3)	205 (0.8)	162 (0.6)	83 (0.3)	59,764	2,683 (4.5)	1,864 (3.1)	1,082 (1.8)	747 (1.2)
충청북도	16,201	117 (0.7)	68 (0.4)	56 (0.3)	24 (0.1)	39,655	724 (1.8)	323 (0.8)	197 (0.5)	197 (0.5)
특별광역시	21,845	576 (2.6)	340 (1.6)	281 (1.3)	147 (0.7)	44,181	5,795 (13.1)	3,198 (7.2)	2,143 (4.9)	1,507 (3.4)
합계	255,098	3,884 (1.5)	2,284 (0.9)	1,789 (0.7)	927 (0.4)	521,750	26,406 (5.1)	17,041 (3.3)	11,249 (2.2)	6,440 (1.2)

주 1: 국민연금공단 자료 B 이용. 괄호 안 수는 지역 전체 대상자 중 제외자 비율임.

주 2: 농가경제조사 이용. 제외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괄호 안 수는 지역 전체 대상자 중 제외자 비율임.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통계청(2018b)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3.3. 재산 수익률 차이에 따른 적정 재산 제외 기준 분석

- 농업생산 기반인 농지를 재산세 과세표준을 이용하여 지원 제외 기준으로 설정하면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농업인이 지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의 배제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적정한 재산 제외 기준을 설정해야 함.
  - 농지가 생산하는 농업 생산물을 기준으로 농지 수익률을 산정하고, 일반 부동산의 수익률을 파악하여, 농지 평가액을 기반으로 한 재산의 적정 제외 기준을 등가 환산 방식을 이용하여 설정하고자 함.
  
- 여러 작물 중에서 논벼 농가의 10a당 소득을 단위 농지당 소득의 대리 변수로 활용함.
  - 2019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1,581천ha) 중 논벼 재배면적(730천ha)은 46.1% 수준으로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작물임.
  - 논벼는 농작업이 표준화되어 있어 단위면적당 표준 생산비 계산이 가능한 작물 중 하나로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농식품부)와 통계청에서 매년 공시하는 객관적 자료임.
  
- 논벼의 소득률은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인 '10a당 논벼 수익성'과 쌀 직불금 산출에 이용하는 '1ha 기준 평균 생산량'을 이용하여 계산함.
  - 2019년 논벼 10a당 논벼 총수입은 1,152,580원, 생산비는 773,205원, 소득은 667,403원으로 소득률은 57.9%임<표 3-8>.
  - 2018년 쌀 변동 직불금 산출에 활용한 1ha 기준 쌀 평균 생산량 5,040kg 기준으로 10a당 총수입을 계산하면 1,219,478원이며 논벼 10a당 소득률인 57.9%를 적용하면 소득은 706,077원임<표 3-9>.

**표 3-8** 2019년도 10a당 논벼 수익성

총수입	생산비	소득	소득률
1,152,580원	773,205원	667,403원	57.9%

자료: 통계청(2020). 2019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

**표 3-9** 2018년도 쌀 평균 생산량(쌀 변동 직불금 기준)과 소득

시장 가격(원/kg)	평균 생산량(kg/ha)	총수입(10a당)	소득(10a당)
2,420	5,040	1,219,478원	706,141원

주: 소득은 총수입에 <표 3-8>의 2019년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단위 면적당(10a) 농지 평가액을 계산하고자 시도별 농경지 평균 공시지가 중 농경지 (답)의 전국 평균 공시지가를 이용함.

- 시도별 농경지 평균 공시지가 중 전국 평균과 경기 지역 평균 공시지가는 <표 3-10> 과 같으며 2018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은 33,682원/㎡, 경기 평균은 83,712원/㎡임.

○ 단위 면적당 농지 평가액과 평균 농업소득을 이용하여 전국 평균 논벼의 농지 수익률을 산정하면 농지 수익률은 전국 평균 1.98%, 직불금 기준 2.10%로 추정할 수 있음<표 3-10>.

- <표 3-8>과 <표 3-9>에서 제시한 10a당 소득을 10a당 평균 공시지가로 나누어 농지 수익률을 계산함.
- 농지 평가액이 높은 경기도의 평균 논벼 농지 소득률은 생산비 기준 0.80%, 직불금 기준 0.84%임.

**표 3-10** 논벼 농지의 소득률 추정 결과

지역	생산비 기준	직불금 기준
전국	1.98%	2.10%
경기도	0.80%	0.84%

자료: 연구진 작성.

○ 일반 재산 수익률로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이용함.

-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연금이나 수당 지급 대상을 선별하거나 연금 납부액 등을 계산 할 때 이용함.
-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재산이 창출하는 수익의 금전 가치를 재산 평가액으로부터 추정하는 기대 수익률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제외 기준으로 해서 활용함.



- 현재 파악 가능한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장애인 연금(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기초연금(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4%임<sup>10)</sup>.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이용하는 소득 및 재산 등급별 점수표에서도 간접적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계산할 수 있으며, <표 3-11>과 같이 6억, 9억, 12억을 기준으로 소득 등급별 점수와 소득 등급별 점수를 비교하여 추정하면 환산율은 3.4%에서 4.0% 수준임.

**표 3-11**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 추정

기준 금액	재산 점수		소득점수		소득 환산율 (추정)
	재산금액	점수	소득금액	점수	
6억 원	59,700만 원 초과 ~ 66,500만 원 이하	881점	2,270만 원 초과 ~ 2,410만 원 이하	866점	4.0% (=2,410/60,000)
			2,410만 원 초과 ~ 2,560만 원 이하	895점	
9억 원	82,400만 원 초과 ~ 91,800만 원 이하	1,001점	2,880만 원 초과 ~ 3,550만 원 이하	981점	3.9% (=3,550/90,000)
			3,550만 원 초과 ~ 3,240만 원 이하	1,009점	
12억 원	114,000만 원 초과 ~ 127,000만 원 이하	1,141점	3,860만 원 초과 ~ 4,100만 원 이하	1,130점	3.4% (=4,100/120,000)
			4,100만 원 초과 ~ 4,350만 원 이하	1,200점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별표 4]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발췌.

- 농지의 수익률이 소득 환산율보다 낮으므로 농지를 이용하는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제외 재산 기준은 일반 부동산을 과세표준으로 이용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나 실업크레딧의 제외 기준인 6억 원보다는 더 높아야 함.
  - <표 3-12>와 같이 일반 부동산의 소득 환산율을 4%로 가정하고 등가 환산 방식을 적용하면, 농업 소득률을 2%로 가정한 12억 원이 최소 재산 제외 기준으로 적정함<sup>11)</sup>.
  - 특히 경기도는 농지 수익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제외 기준은 훨씬 낮아야 함.

10) 이 외에 아래와 같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재산의 소득 환산율도 있으나 이는 현 시점에서 재산 처분을 기준으로 설정한 환산율로 이 연구에서는 논외로 함.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11) 주택은 과세표준 금액 계산할 때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 60%이므로 일반 재산이 모두 주택이라고 가정하면 재산 제외 기준은 12억 원보다 더 높을 수 있음. 예를 들어 6억이 모두 주택이라면 6억에 대응한 농업용 자산의 과세표준 금액은 '6억 원 / 0.6 × 4% = 농업용 자산 과세표준 / 0.7 × 2%'로부터 14억 원임.

**표 3-12** 일반 부동산 6억 원에 대한 농지의 재산 제외 기준 비교

기준 금액	일반 재산		농지	
	소득 환산율	환산 소득액	농업 소득률	재산 가액
6억 원	4.0%	2,400만 원	2.0%	12.0억 원
			1.5%	16.0억 원

자료: 연구진 작성.

## 4. 소득 제외 기준 적정성 검토

- 2020.6.30.까지 적용하는 소득 제외 기준은 ‘농외소득이 평균소득월액의 12배 초과’임.
  - 농외소득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와 제57조에 근거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임.
  - 예를 들어 2019년 농외소득이 3,000만 원이면 농업소득이 500만 원이더라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2020.7.1.부터 소득 제외 기준은 농외소득에서 종합소득으로 변경될 예정임.
  - 종합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에 근거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임.
  
- 소득 제외 기준은 종합소득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인 사람  
 이므로 지원 제외 기준 금액을 1,0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 나누어 농가소득의 분포를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13>과 같음.
  - 소득 제외 기준을 2,000만 원으로 설정하면 농가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가구(소득이 낮은 농가) 중 2.48%<sup>12)</sup> 농가가 지원에서 제외되어 지원 사업 사각지대가 발생함.

<sup>12)</sup>  $(65+49+3,546+484+50+416+295+126)/(48,417+72,706+82,235) = 2.48\%$ .

**표 3-13** 농외소득별 농가소득 현황

단위: 호, (%)

농외소득	농가소득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45,956 (95.4)	71,364 (98.2)	63,368 (77.1)	116,566 (39.9)
1,000만 원 ~2,000만 원	1,221 (2.5)	1,243 (1.7)	14,905 (18.1)	34,932 (12.0)
2,000만 원 ~3,000만 원	65 (0.1)	49 (0.1)	3,546 (4.3)	15,196 (5.2)
3,000만 원 ~4,000만 원	484 (1.0)	50 (0.1)	416 (0.5)	35,002 (12.0)
4,000만 원 ~5,000만 원	295 (0.6)	0 (0.0)	0 (0.0)	22,237 (7.6)
5,000만 원 초과	126 (0.3)	0 (0.0)	0 (0.0)	68325 (23.4)
합계	48,147	72,706	82,235	292,258

주: 괄호는 70세 미만 농가 중 비율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2018b)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소득 제외 기준 변경으로 과세 농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기준에 포함되어 현 제도 수혜자가 향후 탈락할 가능성이 있음.

- 국민연금공단 제공자료 A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 중에서 농외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이나 종합소득이 3,00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이 1,079명, 0.35%임.
-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농업인에게 미미한 수준으로 보이고 65세 미만 대상자에게 연금소득도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반면에 과세 농업소득이 포함되므로 현재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축산 농가의 탈락이 있을 수 있음.<sup>13)</sup>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는 ‘근로소득 제외 종합소득’이 소득 제외 기준이나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종합소득’이 소득 제외 기준이므로 형평성 문제가 있음.

<sup>13)</sup> 부업 기준을 고려하여 종합소득 3,000만 원 및 4,000만 원에 해당하는 사육 규모는 다음과 같음.

- 형평성 차원에서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도 '농업소득 제외 종합소득'을 제외 기준으로 설정해야 함.

○ 소득 기준 변경으로 제외되는 농업인을 최소화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와 형평성을 고려한 소득 제외 기준이 필요함.

- 농외소득과 종합소득은 포함하는 소득이 달라 종합소득 기준 금액은 상기 기준과 다르게 설정해야 함.

- 소득 제외 기준은 농외소득 기준으로 최소 3,000만 원 이상 또는 평균소득월액<sup>14)</sup>의 12배 이상으로 설정하거나 - 현 소득 제외 기준에 농업소득 부분을 추가하여 현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해야 함.

- 향후 종합소득을 농업외 종합소득으로 변경하는 안을 마련해야 함.

축산물	부업 규모			지원 제외 기준별 사육 규모	
	부업 규모	1마리당 소득 (사육규모)	비과세소득	3,000만 원 (사육규모)	4000만 원 (사육규모)
한우번식우	50마리	1,080,000원 (50마리~)	54,000,000원	77.8마리 (50마리~)	87.0마리 (50마리~)
한우비육우	50마리	1,065,000원 (50~99마리)	53,250,000원	78.2마리 (50~99마리)	87.6마리 (50~99마리)
육우	50마리	507,000원 (50~99마리)	25,350,000원	63.5마리 (100마리~)	75.0마리 (100마리~)
젖소	50마리	3,604,000원 (50~99마리)	180,200,000원	58.3마리 (50~69마리)	61.1마리 (50~69마리)
비육돈	700마리	17,150원 (~999마리)	12,005,000원	1,086.3마리 (1,000~1,999마리)	1,344.9마리 (1,000~1,999마리)

주: 1마리당 소득은 사육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적용 사육 규모도 함께 표시함.

자료: 통계청(2019b) 2018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결과.

14) 현행 평균소득월액의 12배는 30,367,608원.

# 4

## 지원 대상 농업인 기준 변경 적정성 분석

### 1. 지원 대상 농업인 인정 기준

○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농업인은 ①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제1호), ②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제2호), ③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제3호), ④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임(제4호, 제5호).

○ 상기 농업인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농업인임을 인정받아 지원을 신청하려면 농업경영체에 등록<sup>15)</sup>했거나 ‘국민연금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지원부를 제출해야 함<sup>16)</sup>.

15)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와 함께 경영주 외 농업인(공동경영주 포함)도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으로 인정함.

16)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는 농업인 제외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나 이에 대한 논의는 지원 제외 기준에서 논의했으므로 이 장에는 언급하지 않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36조가 정하는 대로 시장이나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의 확인을 받은 사람, 「농지법」 제49조에 따라 농지원부로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농업인임.

## 2. 쟁점 분석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농업인의 범위와 관련한 핵심 쟁점은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없는 농업인이 있다는 데 있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농촌에 관련한 용자나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연금보험료는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농업인도 지원하고 있음.
  - <표 4-1>에 따르면 2019년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자 346,707명 중에서 농지원부 제출자는 9,014명으로 전체의 2.6%,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한 농업인은 9,361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하고 있음.

**표 4-1** 신청 방법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건수

단위: 건, (%)

구분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농업인 확인서	합계
전체		328,437 (94.7)	8,950 (2.6)	9,320 (2.7)	346,707 (100.0)
성별	남성	147,940	6,387	3,728	158,521
	여성	180,497	2,563	5,592	188,186
연령	40대 미만	10,368	228	280	10,875
	40~59세	235,315	6,774	6,338	248,799
	60세 이상	82,754	1,948	2,703	87,032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 다른 지원 제도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의 취지에 따라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농업인에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변경할 필요성을 제기함.
  - 예를 들어 농업 부문의 대표적인 보조금인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지침에 따르면 직불금 지급 대상을 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및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으로 규정함.
  
- 이 연구에서는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농어업경영체등록 농업인으로 변경할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과 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변경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경영체의 개별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농가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정책자금의 중복·부당 지금을 최소화하여 정책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등록 대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며 등록대상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법상 농지이고 대상 품목은 전체 농산물, 축산물임.
  - 농업경영체 등록에 필요한 농업인용 서류는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와 생산 수단 증빙 서류가 필요한데 생산 수단 증빙 서류는 자경 농지는 경작사실 확인서와 실경작 증빙 자료(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등), 임차 농지는 임대차계약서와 실경작 증빙 자료임.
  
- 농업경영체 등록 시 경영주인 농업인과 함께 경영주 외의 농업인과 경영주 외의 농업인이 배우자이면 배우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음.
  - <표 4-2>에 따르면 2019년 기준을 농업경영체 수는 1,686,068개이며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한 농업인은 760,500명,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농업인은 35,925명임.

표 4-2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단위: 건

구분	2016	2017	2018	2019	
농업경영체수	1,618,354	1,644,899	1,658,627	1,686,068	
경영주 외 농업인	927,171	820,998	784,339	760,500	
공동경영주	13,362	22,557	26,822	35,925	
성별	남성	1,201,894	1,209,858	1,210,290	1,220,358
	여성	416,460	435,041	448,337	465,683
연령	40대 미만	37,480	37,830	39,334	40,192
	40~59세	558,765	550,599	535,532	520,569
	60세 이상	1,022,109	1,056,470	1,083,761	1,125,307

자료: 농식품부·농관원 내부자료.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농업인의 범위와 관련한 핵심 쟁점은 농업인 확인서는 발급 받을 수 있으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없는 농업인이 있다는 데 있음.

- 농업경영정보 미등록자 중에서 농지원부를 제출한 농업인은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할 수 있으나 아직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함.
- 그러나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한 농업인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능한 농업인으로 판단함.

○ 「농업인 확인 발급규정」에 따르면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경작사실 확인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생산 수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없는 농업인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음(표 4-3).

- 농지가 아닌 곳(대지, 임야, 하천부지, 공장형 등)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판매하여 연간 120만 원 이상의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증명을 제출한 사람
-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한 소속 직원
- 토지를 임대하여 연간 120만 원 이상의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농지 소유자의 거부로 토지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농업인



표 4-3 「농업인 확인 발급규정」 관련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 여부

조항	주요 내용	농업인 여부	농가경영체 등록가능여부
1호	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나.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등본, 대리경작자지정 통지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마. 각 농지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	○	○
	가.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농산물 출하·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한 사람	○	×
	나.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	○
2호	다. (1)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을 재배하는 사람 (2) 농지에 660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을 재배하는 사람 (3)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4)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5) 농지에 1천제곱미터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 생산하는 사람 (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 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	○
3호	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	○ <sup>1</sup>
4호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만,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주: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외의 농업인으로 등록 가능.

자료: 법제처 국가 법령정보센터 농업인 확인 발급규정, 농식품부 내부자료.

○ 농업경영체나 경영주 외 농업인(공동경영주 포함)으로 등록할 수 없는 농업인도 있는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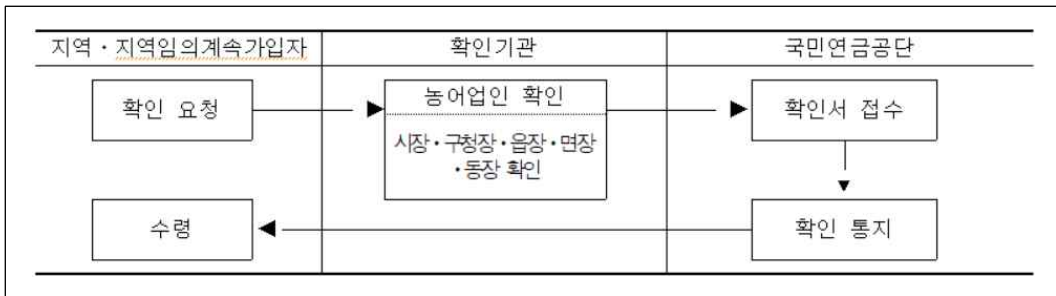
- 부부 또는 가족이 함께 영농을 하나 남편 또는 아버지만 경영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배우자나 가족

- 농업경영체 경영주와 계약을 맺어 1년 중 90일 이상 일하였으나 농업경영체에 경영주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을 거부한 경우

○ 농업인 인정 기준 측면에서 농업인이지만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농업인은 국민연금을 신청할 때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하여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농어업인 확인서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이며 확인서를 작성한 후 시장·구청장·읍장·면장·동장의 확인을 받은 후 국민연금공단에 접수함<그림 4-1>.

**그림 4-1**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처리 과정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3. 지원 대상 농업인 변경 적정성 검토

○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상 등록이 불가능한 사람과 농업경영체나 경영주 외 농업인(공동경영주 포함)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여러 이유로 등록하는데 제약을 받는 농업인 중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당위성이 있는 사람이 있음.

○ 농어업경영정보 미등록자 중에서 농지원부를 제출한 농업인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한 농업인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능한 농업인으로 판단함.

-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이 농어업경영체등록 농업인으로 변경하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운 농업 취약 계층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음.
  - 2019년 기준으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농업인 중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로 지원한 농업인은 농업인 확인서 제출 농업인은 9,320명인데 이들에게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할 방법이 사라짐.
  
- 제외되는 농업인에는 여성 농업인이나 청년 농업인과 같이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운 농업 취약 계층이 많은 것으로 예상함.
  -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렵거나 종사자로 등록하지 않은 여성 농업인, 임대차계약을 제출하지 못해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운 귀농 청년 농업인 등은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들어감.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으로 변경하려면 4개의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다 상위의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대상 변경을 하려면 개정해야 하는 법령은 지원 근거 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7조, 시행규칙 제3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제31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16조) 등이며 모두 상위기본권보장 법령임.
  
- 따라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수 없으나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의 당위성이 있는 농업인이 계속해서 보험료 지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추가로 제도를 개선하고 법령을 개정 후 변경을 고려해야 함.
  -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에게 보험료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써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음.
  -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모든 농업인이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 규정을 완화하고 4개의 관련 법령을 모두 개정할 때까지 변경을 유예해야 함.



# 5

## 지원 제외 기준 개선 방안

### 1. 적정 재산 및 소득 제외 기준 개선 방안

○ 이 연구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농업인 중 고소득·고액재산가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당위성이 있는 지원자가 대상에서 탈락하는 것을 막고 농지 등 농업용 재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표 5-1>의 개선안을 검토함.

**표 5-1**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재산 제외 기준 개선안 요약

기준	제외 기준	비고	
재산 제외 기준	1안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	- 농지 수익률 2%, 일반 부동산 수익률 4% 기준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재산 제외 기준(6억 원) 대응 과세표준
	2안	재산세 과세표준 15억 원 이상	- 70세 미만 전체 농가 중 상위 약 1%만을 제외 기준 과세 표준
	3안	재산세 과세표준 11억 원 이상	- 농지 이외에 건축물까지 농업용 자산으로 포함하고 농지의 수익률을 2%, 농지 외 자산을 일반 부동산 수익률인 4%로 설정한 경우
소득 제외 기준	1안	농업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이 표준월소득 금액의 12배 이상	- 현 농외소득 기준과 유사 - 2020년 적용 금액: 30,367,608원
	2안	종합소득 금액 4,119만 원 이상	- 2019년 농가 평균소득을 기준소득으로 적용
기타	기준에 지원받은 농업인은 최소 6개월 이상 신설 재산 및 소득 제외 기준 적용에서 제외		

자료: 연구진 작성.

## 1.1. 재산 기준 1안: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

- 농지 수익률과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비교하여 제외 기준을 산정함.
  - 농업생산 기반인 농지와 재산을 보유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특징을 고려함.
  - 농지 수익률이 일반 부동산 수익률보다 낮으면 일반 부동산보다 높은 기준을 반대면 낮은 기준을 제외 기준으로 설정함.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실업크레딧의 재산 제외 기준인 6억 원에 대응하는 농업인 재산 기준은 12억 원임.
  - 10a당 논벼 수익성과 평균 공시지가를 활용한 농지 수익률은 약 2%이고 장애인 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6억 원 기준) 등에서 이용하는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4%임.
  - 일반 부동산 6억 원이 창출하는 소득(4%, 2,400만 원)과 동일한 소득을 창출하는 자의 과세표준은 약 12억 원임<표 3-12>.

## 1.2. 재산 기준 2안: 재산세 과세표준 15억 원 이상

- 농가경제조사에서 70세 미만 전체 농가 중에서 재산세 과세표준 15억 원 초과 재산을 보유한 농가는 상위 약 1%임.
  - 제외 기준이 15억 원이면 70세 미만 전체 농가 중 1.2%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와 형평성 고려한 제외 기준도 15억 원보다 훨씬 높음 <표 5-2>.
  - 소득 기준 금액인 3,037만 원에 대응하는 소득 점수는 981점이고, 지원 제외 기준은 2,501점이므로, 최대 가능 재산 점수는 1,520점(=2,501점-981점)임.

- 재산 등급별 점수표에 따라 최대 재산 점수는 1,511점이며 재산 금액은 24.2억 원 초과 27.0억 원 이하로 15억 원임.

**표 5-2**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를 이용한 재산 제외 기준

단위: 만 원, 점

소득점수		재산점수	
소득금액	점수	재산금액	점수
2,880 초과 ~ 3,050 이하	981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1,511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별표 4]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발췌.

### 1.3. 재산 기준 3안: 재산세 과세표준 11억 원 이상

- 농지 이외에 건축물까지 농업용 자산으로 재산 평가액에 포함하고 농지의 수익률을 2%, 농지 외 자산을 일반 부동산 수익률인 4%로 설정하면 재산세 과세표준은 약 11억 원임.
  - 만일 농지 이외에 건축물까지 포함하면 추정 공시지가는 47,154,800원/㎡<sup>17)</sup>임.
  - 이 경우 농지와 건축물을 합한 농업용 재산의 수익률은 약 1.42%로 수익률 4%로 가정한 일반 부동산 6억 원에 대한 농업용 재산의 제외 기준은 약 11억 원임.<sup>18)</sup>
- 현재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는 농업인 중 재산 기준 상위 1% 제외하는 기준임.
  - 국민연금공단 자료 A와 B로부터 1%는 약 11억 원임<표 3-7>.
  - 현 사업 지원자 중 약 1%가 탈락할 것으로 예상하며, 농가경제조사의 70세 이하 표본 농가의 약 3%가 지원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함.
  - 보험료 지원 당위성이 있으나 지원에서 제외되는 농업인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려는 제외 기준이며 농업생산 기반인 농지의 특성을 고려하면 적절한 수준임.

17) 7,154,800원/㎡=33,682원/㎡(토지분 평균 공시지가) + 13,472원/㎡(건물 및 구축물 단위 평가액).

18) 24,000만 원 = 0.7123(평가액 중 토지 비율)×재산제외 기준×1.42% + 0.2877(평가액 중 건축물 비율)×재산제외기준×4%.

○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인 9억 원을 재산 제외 기준으로 설정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논리적 설명은 부족함.

-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며,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을 공제하므로 6억 원이나 9억 원 이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님<표 5-3>.
-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므로 토지나 건물과는 관계없고, 특히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 등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님.
-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 비율을 곱한 금액이므로 공시가격에서 공제하는 금액과는 기준이 다름.

**표 5-3** 종합부동산세 산정 방법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과세표준 계산방법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 원)	공시가격-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 2020년 90%)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80억 원	
분리과세 토지	비과세	전, 답, 과수원 등 농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등

자료: 국세청 성실신고 성실신고지원 종합부동산세.

○ 제외 기준을 9억 원으로 설정하면 현재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상자의 1.52%인 3,884명이 지원에서 제외되며, 공시지가 차이 때문에 지역별로 제외되는 농업인 수의 편차가 심함.

- 경기도에서는 현재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상자의 5.52%, 제주도에서는 3.52%, 특별광역시에서는 2.6%가 대상에서 탈락함<표 3-7>.



#### 1.4. 소득기준: 농업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이 표준월소득 금액의 12배 이상

- ‘농업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표준월소득금액의 12배 이상’은 농가소득이 낮은 농업인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기준임.
  - 상기 기준은 2020년 기준으로 종합소득 3,037만 원 수준으로 현재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선정 기준에서 이용하는 농외소득 기준과 유사함.
  - 종합소득은 농외소득에 포함하지 않았던 과세 농업소득과 배당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함.
  - 농업인은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과세 농업소득은 축산농가 등에게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업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을 제외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함.

#### 1.5. 소득 기준 2안: 종합소득 금액 4,119만 원 이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는 ‘근로소득 제외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종합소득에서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있는데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종합소득 기준이므로 형평성 문제가 있음.
  - 형평성 차원에서 농업인 지원도 ‘농업소득 제외 종합소득’ 금액이어야 하거나 과세 농업소득만큼 제외 기준을 높여야 함.
- 소득 기준 변경으로 제외되는 농업인을 최소화하고자 ‘종합소득 4,119만 원 이상’을 소득 기준으로 제시함.
  - 2019년 농가경제조사의 농가 평균소득인 4,119만 원으로 소득 제외 기준을 설정함.
  - 2019년 농업소득인 1,026만 원과 현 농외소득 기준인 평균소득월액의 12배(3,037만 원)의 합과 유사한 금액임.

## 1.6. 기타

- 재산 제외 기준 신설과 소득 제외 기준 재설정 때문에 탈락하는 기존 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반발을 고려하여 경과 규정이 필요함.
  - 기존 지원 대상 농업인은 최소 6개월 이상 신설 재산 및 소득 제외 기준 적용에서 제외하는 경과 규정이 필요함.

## 2. 재산 및 소득 지원 제외 기준 제안

- 농업인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기존 지원 대상 농업인의 탈락을 최소화하는 지원 제외 기준이 필요함.
  -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정제된 상태에서 기존 지원 대상을 많이 제외하는 기준은 가입률 제고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음.
- 농업생산 기반인 농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농지 수익률을 바탕으로 '재산세 과표기준 12억 원 이상'을 재산 지원 제외 기준으로 제안함.
  - 농업용 재산의 특수성과 함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실업크레딧 지원 제외 기준인 6억 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기준임.
  - 상기 지원 제외 기준은 2020.3 기준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자의 0.7%를 제외하며 70세 미만 농가의 2.2%를 제외함.
  - 이와 함께 2020.3 기준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자의 1%를 제외하거나 70세 미만 농가의 약 3%를 제외하는 기준인 '재산세 과표기준 10억~11억 원 이상' 기준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소득 기준 변경으로 제외되는 농업인을 최소화하고자 ‘종합소득 금액 4,119만 원 이하’를 소득 제외 기준으로 제안함.
  - 2019.5 기준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농업인 중 709명인 0.23%만 탈락함.
  - 향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와 같이 제외 기준을 종합소득에서 농업 외 종합소득으로의 변경을 고려해야 함.
  
- 반발을 고려하여 새로운 지원 제외 기준을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하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경과 규정을 두는 방안이 필요함.
  - 제도 개선의 취지가 농업인 중 고소득 자산가는 제외지만 이미 지원 대상인 농업인이 갑자기 탈락하면 민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큼.
  -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경과 규정을 두어 기존 지원 대상자의 반발을 줄이고 제도의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재산 지원 제외 기준 신설로 인한 농업인의 반발과 지원 수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표 5-4>와 같이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비교하면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금액과 지원 보험료 수준이 더 낮음.

**표 5-4**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별 지원대상 금액 및 지원 보험료 수준 비교

구분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 금액	- 기준소득월액 970,000원 이하면 정률 - 기준소득월액 970,000원 초과하면 정액	- 월평균 보수 2,150,000원까지 정률
지원 보험료	- 정률: 보험료의 50% - 정액: 43,650원	- 5명 미만 사업장: 보험료의 90% -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장: 보험료의 80% 지원

자료: 연구진 작성.

### 3. 지원 대상 농업인 기준 변경 적정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농촌에 관련한 용자나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연금보험료는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도 지원하고 있음.
  - 법 취지에 맞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상도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음.
  
-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으로 변경하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당위성이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하여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는 농업인이 지원에서 탈락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함.
  -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에게 보험료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써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음.
  
- 농업경영체 등록 규정을 농업인 확인서가 발급되는 모든 농업인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4개의 관련 법령을 모두 개정할 때까지 지원 대상 변경을 유예해야 함.

##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

1.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목에 따른 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가 아닌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으로 나누어 얻은 값에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가.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의 등급별 점수는 제2호의 표와 같다.

나. 재산(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부과하는 점수는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 표와 같다.

1)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

2)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1), 2)의 합산액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 2,700만원 이하	2,7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기본 공제액	1), 2)의 합산액 전액	850만원	500만원	2)에 따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에 따른 금액 중 500만원. 다만, 2)에 따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2)에 따른 금액 전액

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하여 자동차 종류별 배기량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는 제4호의 표와 같으며,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에 대한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다.

## 2. 소득등급별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1	100 초과 ~ 120 이하	82	50	7,380 초과 ~ 7,840 이하	2,161
2	120 초과 ~ 140 이하	91	51	7,840 초과 ~ 8,320 이하	2,294
3	140 초과 ~ 160 이하	100	52	8,320 초과 ~ 8,820 이하	2,434
4	160 초과 ~ 180 이하	109	53	8,820 초과 ~ 9,360 이하	2,581
5	180 초과 ~ 200 이하	118	54	9,360 초과 ~ 9,930 이하	2,739
6	200 초과 ~ 240 이하	132	55	9,930 초과 ~ 10,600 이하	2,915
7	240 초과 ~ 280 이하	150	56	10,600 초과 ~ 11,200 이하	3,095
8	280 초과 ~ 320 이하	168	57	11,200 초과 ~ 11,900 이하	3,280
9	320 초과 ~ 360 이하	186	58	11,900 초과 ~ 12,600 이하	3,479
10	360 초과 ~ 400 이하	204	59	12,600 초과 ~ 13,400 이하	3,692
11	400 초과 ~ 440 이하	222	60	13,400 초과 ~ 14,200 이하	3,919
12	440 초과 ~ 500 이하	245	61	14,200 초과 ~ 15,000 이하	4,146
13	500 초과 ~ 600 이하	281	62	15,000 초과 ~ 15,800 이하	4,373
14	600 초과 ~ 700 이하	326	63	15,800 초과 ~ 16,600 이하	4,600
15	700 초과 ~ 800 이하	371	64	16,600 초과 ~ 17,400 이하	4,827
16	800 초과 ~ 900 이하	416	65	17,400 초과 ~ 18,300 이하	5,069
17	900 초과 ~ 1,000 이하	462	66	18,300 초과 ~ 19,200 이하	5,324
18	1,000 초과 ~ 1,100 이하	507	67	19,200 초과 ~ 20,100 이하	5,580
19	1,100 초과 ~ 1,200 이하	552	68	20,100 초과 ~ 21,100 이하	5,850
20	1,200 초과 ~ 1,300 이하	580	69	21,100 초과 ~ 22,100 이하	6,134
21	1,300 초과 ~ 1,400 이하	609	70	22,100 초과 ~ 23,200 이하	6,432
22	1,400 초과 ~ 1,500 이하	637	71	23,200 초과 ~ 24,400 이하	6,758
23	1,500 초과 ~ 1,600 이하	666	72	24,400 초과 ~ 25,600 이하	7,099
24	1,600 초과 ~ 1,700 이하	695	73	25,600 초과 ~ 26,800 이하	7,440
25	1,700 초과 ~ 1,800 이하	723	74	26,800 초과 ~ 28,200 이하	7,809
26	1,800 초과 ~ 1,900 이하	752	75	28,200 초과 ~ 29,500 이하	8,192
27	1,900 초과 ~ 2,020 이하	780	76	29,500 초과 ~ 31,000 이하	8,590
28	2,020 초과 ~ 2,140 이하	809	77	31,000 초과 ~ 32,500 이하	9,016
29	2,140 초과 ~ 2,270 이하	838	78	32,500 초과 ~ 34,100 이하	9,456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30	2,270 초과 ~ 2,410 이하	866	79	34,100 초과 ~ 35,800 이하	9,925
31	2,410 초과 ~ 2,560 이하	895	80	35,800 초과 ~ 37,600 이하	10,421
32	2,560 초과 ~ 2,710 이하	923	81	37,600 초과 ~ 39,400 이하	10,933
33	2,710 초과 ~ 2,880 이하	952	82	39,400 초과 ~ 41,300 이하	11,458
34	2,880 초과 ~ 3,050 이하	981	83	41,300 초과 ~ 43,300 이하	12,012
35	3,050 초과 ~ 3,240 이하	1,009	84	43,300 초과 ~ 45,400 이하	12,594
36	3,240 초과 ~ 3,430 이하	1,038	85	45,400 초과 ~ 47,600 이하	13,204
37	3,430 초과 ~ 3,640 이하	1,066	86	47,600 초과 ~ 49,900 이하	13,843
38	3,640 초과 ~ 3,860 이하	1,095	87	49,900 초과 ~ 52,400 이하	14,525
39	3,860 초과 ~ 4,100 이하	1,130	88	52,400 초과 ~ 55,200 이하	15,277
40	4,100 초과 ~ 4,350 이하	1,200	89	55,200 초과 ~ 58,400 이하	16,129
41	4,350 초과 ~ 4,610 이하	1,272	90	58,400 초과 ~ 62,200 이하	17,123
42	4,610 초과 ~ 4,890 이하	1,349	91	62,200 초과 ~ 66,800 이하	18,316
43	4,890 초과 ~ 5,190 이하	1,431	92	66,800 초과 ~ 72,400 이하	19,764
44	5,190 초과 ~ 5,500 이하	1,518	93	72,400 초과 ~ 79,200 이하	21,524
45	5,500 초과 ~ 5,840 이하	1,610	94	79,200 초과 ~ 87,500 이하	23,668
46	5,840 초과 ~ 6,190 이하	1,708	95	87,500 초과 ~ 97,500 이하	26,267
47	6,190 초과 ~ 6,560 이하	1,810	96	97,500 초과 ~ 114,000 이하	30,029
48	6,560 초과 ~ 6,960 이하	1,920	97	114,000 초과	32,372
49	6,960 초과 ~ 7,380 이하	2,036			

### 3. 재산등급별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1	450 이하	22	31	38,800 초과 ~ 43,200 이하	757
2	450 초과 ~ 900 이하	44	32	43,200 초과 ~ 48,100 이하	785
3	900 초과 ~ 1,350 이하	66	33	48,100 초과 ~ 53,600 이하	812
4	1,350 초과 ~ 1,800 이하	97	34	53,600 초과 ~ 59,700 이하	841
5	1,800 초과 ~ 2,250 이하	122	35	59,700 초과 ~ 66,500 이하	881
6	2,250 초과 ~ 2,700 이하	146	36	66,500 초과 ~ 74,000 이하	921
7	2,700 초과 ~ 3,150 이하	171	37	74,000 초과 ~ 82,400 이하	961
8	3,150 초과 ~ 3,600 이하	195	38	82,400 초과 ~ 91,800 이하	1,001
9	3,600 초과 ~ 4,050 이하	219	39	91,800 초과 ~ 103,000 이하	1,041
10	4,050 초과 ~ 4,500 이하	244	40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1,091
11	4,500 초과 ~ 5,020 이하	268	41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1,141
12	5,020 초과 ~ 5,590 이하	294	42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1,191
13	5,590 초과 ~ 6,220 이하	320	43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1,241
14	6,220 초과 ~ 6,930 이하	344	44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1,291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15	6,930 초과 ~ 7,710 이하	365	45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1,341
16	7,710 초과 ~ 8,590 이하	386	46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1,391
17	8,590 초과 ~ 9,570 이하	412	47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1,451
18	9,570 초과 ~ 10,700 이하	439	48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1,511
19	10,700 초과 ~ 11,900 이하	465	49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1,571
20	11,900 초과 ~ 13,300 이하	490	50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1,641
21	13,300 초과 ~ 14,800 이하	516	51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1,711
22	14,800 초과 ~ 16,400 이하	535	52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1,781
23	16,400 초과 ~ 18,300 이하	559	53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1,851
24	18,300 초과 ~ 20,400 이하	586	54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1,921
25	20,400 초과 ~ 22,700 이하	611	55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1,991
26	22,700 초과 ~ 25,300 이하	637	56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2,061
27	25,300 초과 ~ 28,100 이하	659	57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2,131
28	28,100 초과 ~ 31,300 이하	681	58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2,201
29	31,300 초과 ~ 34,900 이하	706	59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2,271
30	34,900 초과 ~ 38,800 이하	731	60	778,124 초과	2,341

#### 4. 자동차등급별 점수

구분			사용연수별 감액을 및 결정 점수		
등급	자동차 종류 및 가액	배기량 등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100%	80%	60%
1	4천만 원 이상 승용자동차	800cc 이하	18	14	11
2	4천만 원 미만 그 밖의 승용자동차	모든 차량	20	16	12
3	4천만 원 이상 승용자동차	800cc 초과 1,000cc 이하	28	23	17
	4천만 원 이상 그 밖의 승용자동차	모든 차량			
4	4천만 원 이상 승용자동차	1,000cc 초과 1,600cc 이하	59	47	35
5	4천만 원 미만 승용자동차	1,600cc 초과 2,000cc 이하	79	63	48
6	4천만 원 이상 승용자동차		113	90	68



구분			사용연수별 감액을 및 결정 점수		
7	4천만 원 미만 승용자동차	2,000시시 초과	109	87	65
8	4천만 원 이상 승용자동차	2,500시시 이하	155	124	93
9	4천만 원 미만 승용자동차	2,500시시 초과	130	104	78
10	4천만 원 이상 승용자동차	3,000시시 이하	186	149	111
11	승용자동차	3,000시시 초과	217	173	130

-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 자동차 가액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 2등급 및 3등급 중 "그 밖의 승용자동차"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57조, 시행규칙 제36조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 11. 26., 2010. 7. 1., 2015. 12.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조에서 "농업"이라 한다)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이하 이 조에서 "어업"이라 한다) 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판매액 또는 종사 기간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하여 농어업인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0. 7. 1., 2015. 12. 22.>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어업인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7. 1., 2019. 12. 31.>

1.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2.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거주지나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0. 7. 1., 2014. 10. 15.>

1.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로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 1의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2.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
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어업권을 등

록한 자,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

[시행일 : 2020. 7. 1.] 제57조제3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①** 영 제57조제4항 본문에 따라 농어업인임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농어업인 확인서를 그가 거주하는 지역 또는 농업이나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지역의 해당 시장·구청장·읍장이나 면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 2016. 11. 29.>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12. 15., 2015. 12. 2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2015. 12. 22.>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제목개정 2015. 12. 22.]

## 농지법 제49조

-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①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② 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농지원부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원부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로 본다.
- ⑤ 농지원부의 서식·작성·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5. 27., 2011. 3. 9., 2015. 6. 22., 2017. 3. 21., 2018. 2. 21.>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에 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

**제4조(농업인 확인 기준)**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나. 농지법 제5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별표 1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농지원부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다. 농지법 제2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 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라. 농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마. 나목과 다목, 나목과 라목, 나목·다목·라목 및 다목과 라목에 따른 각 농지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  
바. (삭제)
2.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가.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법 시행령 제5조의 농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농산물 출하·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한 사람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2)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승계한 자
  - (3) 「축산법」제34조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하여 가축을 구매하는 자
  -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이 고시에서 생산자단체는 이를 말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자

(6)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 1천 제곱미터 이상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3)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4)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3만제곱미터 이상

다. 기타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

(1)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2) 농지에 660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3)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4)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된 사람
- (5) 농지에 1천제곱미터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조경목적 제외) 생산하는 사람
- (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 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 (7) (삭제)

3.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 (1)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농업인 충족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이하 “농업경영주”라 한다)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는 예외로 하고, 농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농업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동일한 사람)
- (2) (1)의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또는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사람
- (3) 「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단, 18세 미만 제외)

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 (삭제)

4.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

조합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만,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6. 11. 29.>

(앞쪽)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처리기간
				3일
농어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농어업인 해당일		년 월 일		
농어업인 구분		<input type="checkbox"/> 농업인(축산업인, 임업인, 법인종사자 포함), <input type="checkbox"/> 어업인		
연간 농수산물 판매액		원		
연간 농어업 종사일		일		
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input type="checkbox"/> 영농조합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 다만,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 다만,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 종사자  (상기자는 법인에서 고용분야가 명기된 고용기간 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할 것)		
농어업 규모	농지	㎡, 어선	톤, 양식	ha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사람이 농어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의 사람이 농어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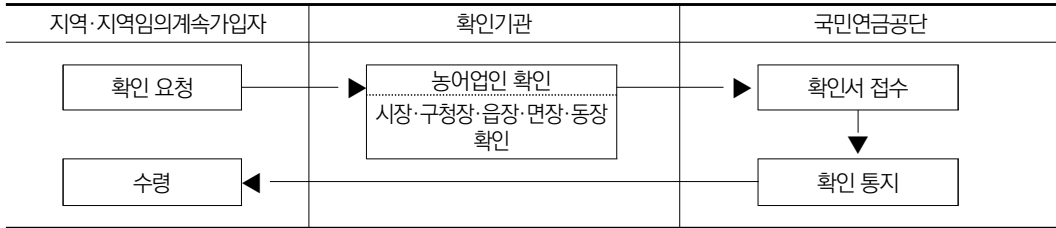
년 월 일

시장/구청장/읍장/면장/동장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동장의 농어업인 확인을 받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어업인에서 제외됩니다.

1.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농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과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어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사람
2.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농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과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어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을 합산한 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농어업인 구분》

농업인(축산업인 및 임업인 포함)	어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합니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li> <li>○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li> <li>○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li> <li>○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li> <li>○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li> <li>* 농업·어업 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 어업의 판매액을 농업의 판매액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판매액에 더하여 계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농업의 종사기간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종사기간에 더하여 계산합니다.</li> <li>※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합니다)</li> <li>■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합니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li> <li>■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합니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li> <li>○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li> <li>○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li> <li>○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li> <li>※ 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li> </ul> </li> </ul>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2. "농어업인 구분"란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여부를 "☑" 표시 하십시오.
3. 농어업관련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법인으로부터 고용일수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농어업인 확인서에 첨부하고, 해당란에 "☑" 표시 하십시오.
4. 농어업인 확인서는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내역변경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농어업인 확인은 토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사무가 위임된 경우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6. 30.>

1. 영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
2. 영 제45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영 제45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 나.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 다.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
  - 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사람
3. 영 제45조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가입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4. 법 제7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5. 법 제7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중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
6. 법 제7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가입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제31조)

**제27조(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①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시·도지사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소속으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8. 9. 18.>

②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10. 7. 23.]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전통문화·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이하 “특산물등”이라 한다)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이하 “농어촌산업”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1. 특산물등의 조사·발굴 및 권리보호에 관한 지원
2. 특산물등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지원
3. 특산물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표·포장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지원
4. 특산물등의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한 자금 지원
5. 특산물등의 생산기술의 전수·계승 및 이와 관련된 인력육성의 지원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등 기업집적화 및 농어촌산업 인프라 조성 지원
7. 농어촌산업 창업 및 역량강화 지원
8. 그 밖에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전문개정 2010. 7. 23.]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16조)

**제13조(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에 관한 협조 요청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농어촌에 제공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16조(정신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복귀시설 중 농어촌에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의 치료·재활을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농어촌에서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며, 정신보건센터의 설치·운영 등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8.]

# 농업인 사회보험료 지원 및 노후안정 지원 사업 현황

○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부표 2>와 같음.

**부표 1** 농업인 지원 사업 요약

구분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주체
사회보험료 지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농어업인	농식품부
	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 지원사업	농업인	농식품부
	농어촌 지역 보험료 경감	농어촌 거주자	보건복지부
노후안정 지원	농지연금	만 65세 이상 농경지소유자	농식품부
	경영이양직불	만 65세 이상 74세 이하 농업인	농식품부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보건복지부

자료: 연구진 작성.

## 1. 사회보험료 지원

### 1.1. 농업인건강보험료 지원사업

○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노후 생활 보장과 사회 안정망 내실화를 목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게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함.

- 건강 보험료를 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1,800점 이하는 보험료의 28%를 정률로, 1,801-2,500점 이하는 1,801점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28%를 정액으로 지원하며, 2,501점 이상은 지원에서 제외함.
- 2019년을 기준으로 예산은 연간 약 1,700억 원 수준이며, 농어촌·준농어촌에 거주 하는 32.5만 농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음.



**부표 2**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내용

보험료 부과점수	내용
1,800점 이하	보험료의 28% 정률 지원
1,801~2,500점 이하	1,801점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28% 정액 지원
2,501점 이상	지원 제외

자료: 정부24.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54300000048>.

## 1.2.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함.

- 보험사업은 민간보험사인 NH농협생명보험과 NH농협손해보험이 대행하는데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민간보험이 아닌 정책보험으로 분류함.
- 농업인안전보험 지원대상은 만 15~87세(일부 상품은 84세)의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고, 농기계종합보험 대상은 가입대상 농기계 12종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임.
- 정부가 농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2019년 이후 영세농가의 지원률을 70%로 상향 조정함.

**부표 3** 2018년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현황

단위: 천 명, 천 건, 억 원

구분	가입현황	보험료	국고지원	지급금액
농업인안전보험	807	862	425	653
농기계종합보험	83	518	225	422

주: 가입률=(당해연도 보험가입자수/보험가입대상 농림업경제활동인구수)× 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성과보고서 각 연도.

### 1.3. 농어촌 지역 보험료 경감사업

○ 보건복지부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자 중 농어업인, 광업인,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세대별 건강보험료의 22%를 경감함.

- 대상지역은 군 및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이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와 군 지역 중 동지역으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지역임.

**부표 4** 농어촌 지역 보험료 경감사업 지역 및 대상자 자격

농어촌 지역	지역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li> <li>•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li> <li>•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li> <li>•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사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와 군의 지역 중 동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li> <li>•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li> <li>•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li> <li>•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li> </ul>

자료: 찾키쉬운생활법령정보.

<https://m.easylaw.go.kr/MOB/CnpClsInfoRetrieve.laf?csmSeq=1141&ccfNo=4&cciNo=1&cnpClsNo=2>.

## 2. 노후 생활 지원

### 2.1. 농지연금

○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소유 농지를 담보로 하여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 주체는 농식품부, 시행 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임.

- 사업지원대상은 농지를 소유한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고령농업인임. 지급방식은 종신형, 기간형(5, 10, 15년),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 등이 있으며 월 지급금 상한은 300만 원임.

-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74세이고 2019.8 기준으로 연금 총 지급액은 약 4,382억 원, 일시인출금은 약 550억 원임.
- 2019.8 기준으로 신규 가입자의 월 평균 지급액은 약 90만 원, 담보 농지 평균평가액은 약 1.9억 원이며 평균 면적은 3,151㎡임.

**부표 5** 농지연금 연도별 가입 통계

단위: 건, m<sup>2</sup>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8월	누계	
가입건수	1,577	1,848	2,652	2,537	13,820	
총지급액(백만 원)	52,166	67,305	100,297	103,928	438,160	
일시인출금(백만 원)	-	755	17,734	36,694	55,183	
신규가입자	월 평균 지급액(천 원)	998	976	820	898	-
	담보농지 평균 가격(백만 원)	184	182	170	187	-
	담보농지 평균 면적	4,126	4,140	3,228	3,151	-

주: 누계는 2011년부터 포함이며 가입자 평균연령 74세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정책홍보 일부 수정. <https://www.mafra.go.kr/mafra/1333/subview.do>.

## 2.2. 경영이양직불

○ 고령농의 경영 이양과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등에 양도하거나 장기임대하여 은퇴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원주체는 농식품부, 사업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임.

- 매도 시 연 330만 원/ha, 임대 시 연 250만 원/ha을 은퇴농에게 지급함.
- 대상은 보조금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 영농 중이며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가진 65세 이상 74세 이하 농업인임.

## 2.3. 기초연금

○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도입한 연금 제도임.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에게 최대 인당 30만 원을 지급함.

- 소득과 재산의 소득인정액<sup>19)</sup>이 당해 연도 선정기준액<sup>20)</sup>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임.
- 2020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48만 원, 부부 가구는 236.8만 원임.

**부표 6**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단위: 만 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단독가구	119	131	137	148
부부가구	190.4	209.6	219.2	236.8

자료: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함.

- 소득평가액은 월 근로소득에서 96만 원의 공제액을 제한 금액의 70%의 수준에서 기타소득을 더하여 산출하며 자세한 소득 인정액은 <글상자 1>과 같음.

**글상자 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sup>1</sup> + 재산의 소득 환산액<sup>2</sup>**

1: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96만 원 공제) × 70% + 기타소득

2: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

\* (기본재산액) 주거유지비용 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 혹은 3,000cc 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에 반영

자료: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577925323690\\_20200102093523\\_hwp&rs=/upload/viewer/result/202004/](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577925323690_20200102093523_hwp&rs=/upload/viewer/result/202004/).

- 19)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소득에는 근로·사업·공적이전소득이 반영되고, 재산에는 일반·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함.
- 20) 선정기준액이란 만 65세 이상 인구의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소득·재산,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모두 고려하여 반영함.

## 참고문헌

- 국민연금공단. 2019. 『2018년 국민연금통계연보(제31호)』
- 김현수·류재린. 2019.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기준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 임소영·최예준. 2015.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심층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각연도 . 『성과보고서』.
- 통계청. 2018a. 『2017 인구주택총조사』.
- \_\_\_\_\_. 2018b. 『농가경제조사』.
- \_\_\_\_\_. 2018c. 『농가경제조사 지침서』.
- \_\_\_\_\_. 2019a. 『통계로 본 쌀 산업 구조 변화』.
- \_\_\_\_\_. 2019b. 『2018년 축산물생산비 조사결과』.
- \_\_\_\_\_. 2020. 『2019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 <참고 인터넷 사이트>
- 국민연금공단. <<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php>>.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검색일: 2020.5.3.
- 국세청.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4.asp?cinfo\\_key=MINF6920100719122833](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4.asp?cinfo_key=MINF6920100719122833)>. 성실신고지원 종합부동산세. 검색일: 2020.5.3.
-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mafra/1335/subview.do>>.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검색일: 2020.5.3.
-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mafra/1333/subview.do>>. 농지연금. 검색일: 2020.5.3.
- 법제처.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 2020.5.3.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577925323690\\_20200102093523.hwp&rs=/upload/viewer/result/202004/](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577925323690_20200102093523.hwp&rs=/upload/viewer/result/202004/)>. 기초연금소득산정액. 검색일:2020.5.3.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54300000048>>.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검색일: 2020.5.3.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02522>>.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검색일: 2020.5.3.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201500004>>. 실업크레딧. 검색일: 2020.5.3.
- 생활법령정보. <<https://m.easylaw.go.kr/MOB/CnpClsInfoRetrieve.lafcsSeq=1141&ccfNo=4&cciNo=1&cnpClsNo=2>>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검색일:2020.5.3.

통계청. <<http://www.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confmNo=101042>>. 농가경제조사. 검색일: 2020.5.3.